

2020년 마리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3. 23. ~ 3. 26. / 4일간
- 감사범위 : 2017. 4. 22.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 5건

1)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산정 부적정(시정)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하자보증각서 등을 미제출, 「◇◇마을 농로 및 세천공사」 등 9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하자보증서 및 하자보증각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업무 소홀(주의)

- 「지방계약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여 서명 날 인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함.

- 마리면에서는 2017 ~ 2019년까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공제) 가입 여부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계약하여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 시 책임한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 강사료 기타소득세 등 과소징수(시정, 재정상 징수 202천원)

-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 4월~12월은 필요경비 공제율 70%, 2019년 이후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마리면에서는 2018.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9,214,400원의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면서,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로 적용하여 총 202천원을 과소징수 하였음.

4)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미반환(시정, 재정상 반환 2,581천원)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기관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 마리면에서는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환 청구된 2,581천원에 대해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5) 관외출장여비 집행기준 미준수(시정, 재정상 회수 34천원)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는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마리면에서는 2018. 11월 ◆◆◆ 등 2명의 관외출장 여비를 집행하면서 자가용 동승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함으로써 여비집행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비 34천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음.

2] 건설분야 : 3건

1) 건설공사 설계검토 소홀 및 부적정(시정, 재정상 회수 2,764천원)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등에서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견정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마리면에서는 “○○○○○○ 진입로 정비공사” 등 13건에 대해 설계내역과 실제사토장의 사토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하였음.

2)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시정, 재정상 회수 132천원)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

전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마리면에서는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되는 공사안내간판 등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고 과다 지급하였음.

3)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시정, 재정상 회수 810천원)

-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현장에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시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최종 처리업체 확인서 등을 10톤 이상인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중량계근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 진입로 정비공사”등 14건에 대하여 준공 시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확인서류 미첨부, “▲▲ ▲▲▲ 세천정비공사”등 2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총 810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3] 복지분야 : 5건

1)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가구의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 후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을 원할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후 급여관리 제외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세대에 대해 2017.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히 하였음.

2) 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사망,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유효기간 도래 등의 사유로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 복지카드를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2018.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자 ☆☆☆등 12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미발송하여 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세무분야 : 3건

1)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시정, 재정상 추징 3,235천원)

- 「지방세법」 등에 의거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등 3개 사업장은 물적설비(영업장, 창고, 사무실 등)와 인적설비(수시고용 포함)를 갖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소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를 관리하지 않았음.

2) 지목변경 토지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소홀(지정, 재정상 추징 250천원)

-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미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마리면에서는 2015. 10월부터 2018. 6월까지 마리면 말흘리 ***-**-번지 등 4개 필지가 토지의 지목 변경 되어 취득 미신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부과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관리(추징 조치)를 하지 않았음.

3) 재산세대장 정비(비농업법인 농지 분리과세 적용) 소홀(시정)

-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리과세 대상 중 전·답·과수원의 경우 법인 소유의 농지일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만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속함.
- 마리면에서는 2019. 9월 주식회사 ▽▽▽▽▽▽▽▽▽▽▽ 의 1인이 취득한 마리면 대동리 ****-*번지 등 9필지에 대해 비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지 않았음.

5] 산업분야 : 4건

1) 농지이용 실태조사 부적정(시정)

- 「농지법」 등에 따라 1996.1.1.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2019. 6. 30일 기간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451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하면서 2018. 3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마리면 말흘리 ****번지 등 2필지에 대해 휴경으로 잡목이 자라고 있음에도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 대상농지 보고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음.

2) 2020년 여성바우처 지원 선정 대상자 확인 소홀(시정)

-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경상남도)” 등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지원과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1년간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지원하는 여

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거주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연령,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문화누리카드 중복수혜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2020. 1월 ▼▼▼의 여성농업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 문화누리카드 수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중복여부에 미해당을 표시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였음.

3) 농지전용 용지 직불금(쌀+밭) 과다지급(시정, 재정상 회수 37천원)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포함) 농지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지급 제외 농지에 해당됨.
- 마리면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직불금지급대상 제외농지 6필지에 대해 총 37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4) 귀농세대 영농정착금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시정)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등에 따르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지원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대상자가 확정 통보되면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5년간 타용도 전용, 군외 지역 전출, 사업자 이탈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 마리면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농정착금지원을 받은 11세대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활용 여부를 기록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았음.

6] 주민, 기탁분야 : 4건

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소홀(주의)

- 「주민등록법」 등에 따르면 전입신고 처리 시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야 함.

- 또한 노인시설 또는 요양원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와 함께 서면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음.
- 마리면에서는 전입자의 확인 또는 사실조사 없이 10건, 노인시설 또는 요양원에 전입신고 하면서 서면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9건을 전입신고 처리하였음.

2)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재정상 부과 12천원)

- 「주민등록법」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불명 재등록신고를 지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기간과 신고 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 1/2 감경, 사전통지 중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최고·공고된 자 중 2018년 거주불명 재등록신고를 6개월 이내 지연하여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에게 감경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감경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부과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최대한 감경한다 하더라도 최고 42,000원을 감경한 28,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1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3) 휴가사용 부적정(시정, 회수 104천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은 2017.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해당연도가 아님에도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공가를 사용함으로써 2017년 연가보상비를 104천원 과다 지급 받았음.

4)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및 신고처리 소홀(시정)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수리 시에는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소 신고관리 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마리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4개소의 업체에 종량제봉투를 판매소를 □□□에 대해 계약체결 없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신고수리 하였음.